2023년 제8호 (통권4호)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ISSUE BRIEF

2023.8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DFFT)"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분석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C/O/N/T/E/N/T/S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DFFT)”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분석

요약

● 본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브리프 2023년 제8호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인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DFFT[1])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 분석 – OECD 매핑 보고서 소개를 통해(信頼性のある自由なデータ流通(DFFT)を促進するための多様なアプローチの分析-OECDマッピングレポートの紹介を通じて-)」**를 요약·정리하였음

● RIETI의 보고서는 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MAPPING COMMONALITIES IN REGULATORY APPROACHES TO CROSS-BORDER DATA TRANSFERS(OECD 매핑 보고서)」를 근간으로 참조하여 저술됨**

● RIETI는 OECD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법 유형을 서술**하였음

- 구체적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a) 단독 메커니즘(Unilateral mechanisms), b) 다국간 협정(Plurilateral arrangements), c) 무역협정(Trade agreements), d) 표준 및 기술에 관한 이니셔티브(Standards and technology-driven initiatives) 4가지로 정리함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브리프 2023년 제2호를 통해 유사한 주제를 다룬 바 있음. K-data는 당시, OECD가 2022년 12월 발표한 「MEASURING THE VALUE OF DATA AND DATA FLOWS(OECD, 2022.12)」 내용을 토대로 국경 간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함

- K-data는 2021년에도 OECD가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OECD의 데이터 및 데이터 흐름의 가치에 대한 관점, K-Data 2021.1” 명칭의 이슈브리프를 발간함

- 보다 최근 보고서인 23년 제2호에서는 국가 간 데이터의 흐름의 명확한 측정을 위해서 국민계정체계(National Account System, NAS)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룸

- 이와 비교하여, 본 이슈브리프 제8호는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DFFT)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봄

● RIETI의 보고서는 **각국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접근법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을 조합해 사용하고 있다는 OECD 매핑 보고서 분석에 주목**함

- OECD 매핑 보고서는 각 접근법 유형 간에 공통성(Commonalities), 융합성(Convergence), 보완성(Complementarity)이 존재한다고 서술함

● **본 보고서는 OECD 매핑 보고서의 분석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접근법에 따라 보완성을 높일 방법을 제시함**

- 크게 △ 단독 메커니즘과 다국간 협정, △ 단독 메커니즘과 무역협정, △ 다국간 협정과 무역협정, △ 기술과 기타 접근법 간의 보완성에 대해 서술함

● **OECD 매핑 보고서는 최근 OECD, G20, G7 등 국제회의에서 DFFT에 관한 논의의 기초가 되어 그 내용의 이해가 중요함**

● 본 보고서는 각 접근법 간 보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DFFT 관련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

1)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에서 Flow는 ‘이동’으로 번역함

PART Ⅰ

개요

최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세계 각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각국 정부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 집행, 디지털 보안, 자국 산업정책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데이터 관련 규제를 업데이트 및 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조건을 더하거나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국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 그림 1 | 각국의 데이터 규제 증가 경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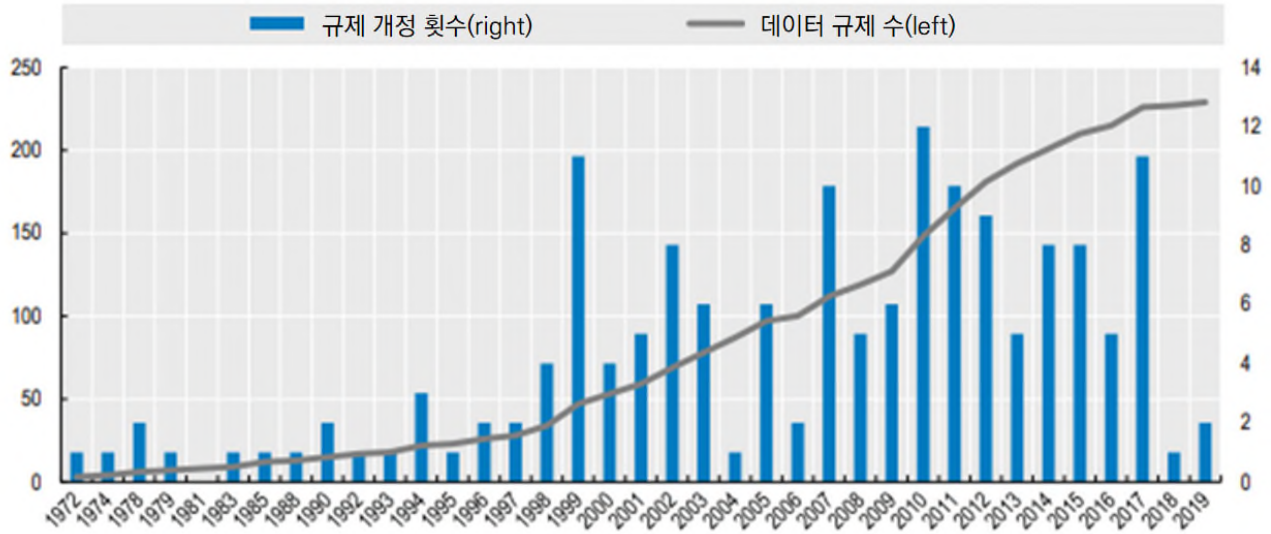

참고 : "데이터 규제(data regulations)"에는 데이터 전송 및 로컬 저장 요건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규제가 포함됨. 국가마다 규제 구조가 다양한데 일부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조치를 포괄하는 단일 규제가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이동 제한, 현지 저장 요건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Casalini and Lopez-Gonzalez (2019)

한편, 국경 간 데이터 이전(data transfer)[3)]은 기업의 활동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모색함

-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함
- 특히,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다보스포럼과 같은 해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DFFT : Data Free Flow with Trust)**'이라는 용어를 정립하였으며,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짐

2) OECD 매핑 보고서, 8페이지 그림 1
3) 본 보고서에서 데이터 이전은 data transfer를 뜻하고, 데이터 이동권은 data portability를 뜻함

국제적 논의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보고서 중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5월 발표한 「Mapping Commonalities in Regulatory Approaches to Cross-Border Data Transfers(OECD 매핑 보고서)」가 있음

- OECD 매핑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와 규범이 다양하지만, 국제적 논의를 위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됨
  - OECD 매핑 보고서는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사용 중인 다양한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map)함으로써,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 및 규범의 국제적인 논의를 활발히 전개함
- OECD 매핑 보고서의 문제의식, 목적과 분석기법, 분석결과를 그림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그림 2 | OECD 매핑 보고서 개요[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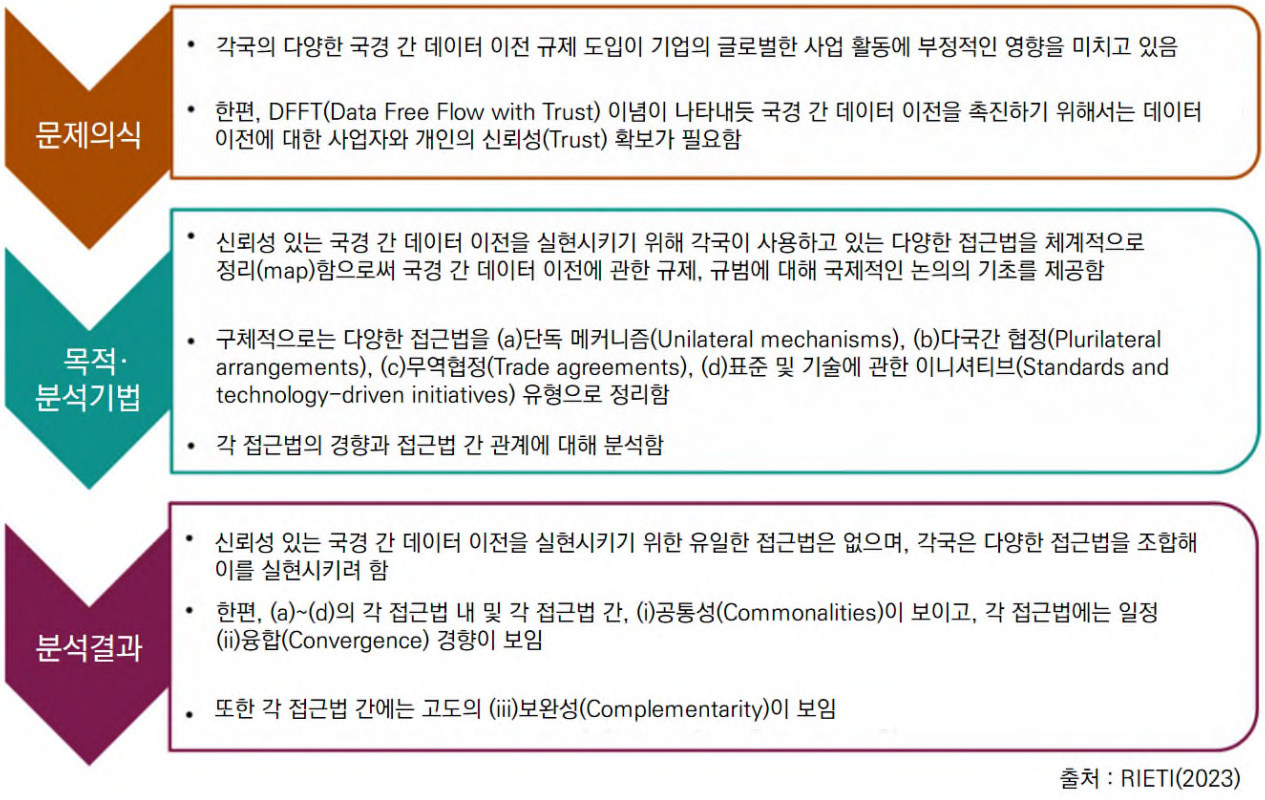

출처 : RIETI(2023)

- OECD 매핑 보고서의 각 접근법, (i)공통성(Commonalities), (ii)융합성(Convergence), (iii)보완성(Complementarity)은 이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2023년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는 DFFT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인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artnership(IAP)"을 설립하기로 합의함

4) RIETI(2023),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DFFT)"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분석(信頼性のある自由なデータ流通(DFFT)を促進するための 多様なアプローチの分析 - OECDマッピングレポートの紹介を通じて -)」, 4페이지 그림 2

● IAP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함

- 기존 데이터 관련 규제 요건에 적합한 데이터 이동을 위해,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정책, 도구 및 관행 개발
- DFFT의 주요 저해 요인 및 과제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등 DFFT 관련 기술 개발
- DFFT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사례, 국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등 인증 메커니즘

위와 같은 문제는 OECD 매핑 보고서에서도 다루고 있어, 이들 문제를 검토하는 데 OECD 매핑 보고서가 도움이 됨

일본은 2019년 다보스포럼 및 같은 해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DFFT'의 개념을 제창한 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함

● 예를 들어, 2021년에는 경제산업성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회(DFFT 연구회)'를 설립하고, 2022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며[5] DFFT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함. 제언의 개요는 그림 3과 같음

| 그림 3 | DFFT 연구회 보고서의 제언 개요[6]

출처 : RIETI(2023)

5) RIETI(2022), 「국경을 넘은 데이터 이동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2022년 2월 28일)
6) RIETI(2023),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DFFT)"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분석(信頼性のある自由なデータ流通(DFFT)を促進するための 多様なアプローチの分析 - OECDマッピングレポートの紹介を通じて -)」, 6페이지 그림 3

- 제언 중 '상호운용성'과 '관련 제도와의 보완성'은 OECD 매핑 보고서에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본 보고서는 OECD 매핑 보고서를 소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법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ECD 매핑 보고서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접근법 간의 보완성(complementarity)에 대해 검토함
  - 이를 통해 OECD 매핑 보고서의 분석을 기초로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
- 본 보고서는 이들 분석이 향후 DFFT 규범 제정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논함

PART Ⅱ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동을 위한 접근법

OECD 매핑 보고서의 분석 내용에 의거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법을 소개함

- OECD 매핑 보고서는 국경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법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a) 단독 메커니즘(Unilateral mechanisms), b) 다국간 협정(Plurilateral arrangements), c) 무역협정(Trade agreements), d) 표준 및 기술에 관한 이니셔티브(Standards and technology driven initiatives)로 분류함

| 그림 4 | 국경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동 실현을 위한 접근법 분류[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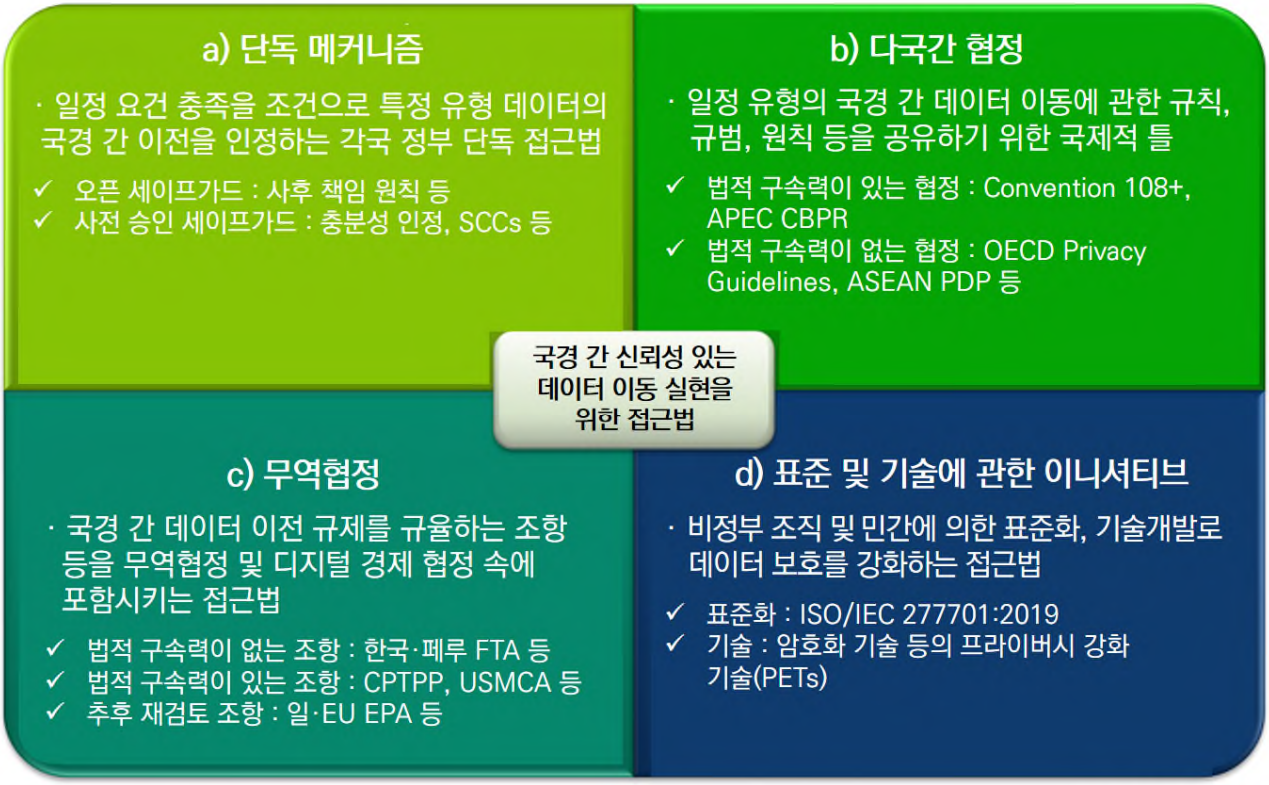

출처 : OECD(2021)

a) 단독 메커니즘(Unilateral mechanisms)

단독 메커니즘은 일정 요건(세이프가드) 충족을 조건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인정하는 각국 정부의 단독 규제 또는 정책을 의미함

7) OECD 매핑 보고서, 12페이지 그림 3

● 단독 메커니즘은 ①오픈 세이프가드(Open safeguards)와 ②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Pre-authorised safeguards)가 있음

오픈 세이프가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 데이터 취급에 관한 책임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시스템임

● 오픈 세이프가드에는 사후 책임(Ex-post accountability), 계약(Contract), 민간 부문을 통한 적합성 인증(Private sector adequacy)이 있음

- 사후 책임(Ex-post accountability)은 사전 절차 없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인정하며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후 책임 부담이 규제 대상자에게 있음

- 계약(Contract)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주체에게 계약을 통해 데이터 이동 상대국의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권장 또는 요구하는 방식

- 민간 부문을 통한 적합성 인증(Private sector adequacy)은 공공기관이 정한 원칙에 따라 데이터 이동 상대국에서 충분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한지 민간 부문에 자체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임. 예를 들면, 호주의 프라이버시 원칙(Privacy Principles)[8]이 이에 해당함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사전에 공적 승인을 요구하는 시스템임

●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는 정부의 공적인 적합성(public adequacy)[9] 인정, 정부에 의한 기타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가 있음

- 정부의 공적인 적합성 (public adequacy) 인증은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 정부가 데이터 이동 상대국의 법 제도하에서 충분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한지 심사한 후, 충분하다고 인정한 국가에만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는 방식임. 예를 들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이에 해당함[10]

- 정부에 의한 기타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는 데이터 이동 상대국의 데이터 보호 법제가 충분하지 않지만 계약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가 보장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는 방식임. 예를 들면, EU의 GDPR에 포함된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11]과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s)[12]이 이에 해당함

8) 호주의 프라이버시 원칙(Privacy Principles)은 동 원칙의 규율 대상인 주체가 개인정보를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전에 국외의 데이터 수신자가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데, 데이터 수신자가 호주의 프라이버시 원칙이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기 사항은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호주의 프라이버시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Read the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at https://www.oaic.gov.au/privacy/australian-privacy-principles/read-the-australian-privacy-principles (as of 17 May 2023)

9) Public adequacy는 공적인 적합성으로 번역함

10) GDPR 45조

11) 표준 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s)은 EU가 사전 승인한 모델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임(GDPR 46조 2항(c))

12)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s)은 다국적 기업, 국제 조직 및 기업 그룹이 GDPR 규정에 따라 조직 내에서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임(GDPR 47조)

각국의 단독 메커니즘 내용을 분석하면 54%가 오픈 세이프가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65%가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픈 세이프가드 사용 비율과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 사용 비율을 더하면 100%를 초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임)

| 그림 5 | 오픈 세이프가드와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 사용 비율[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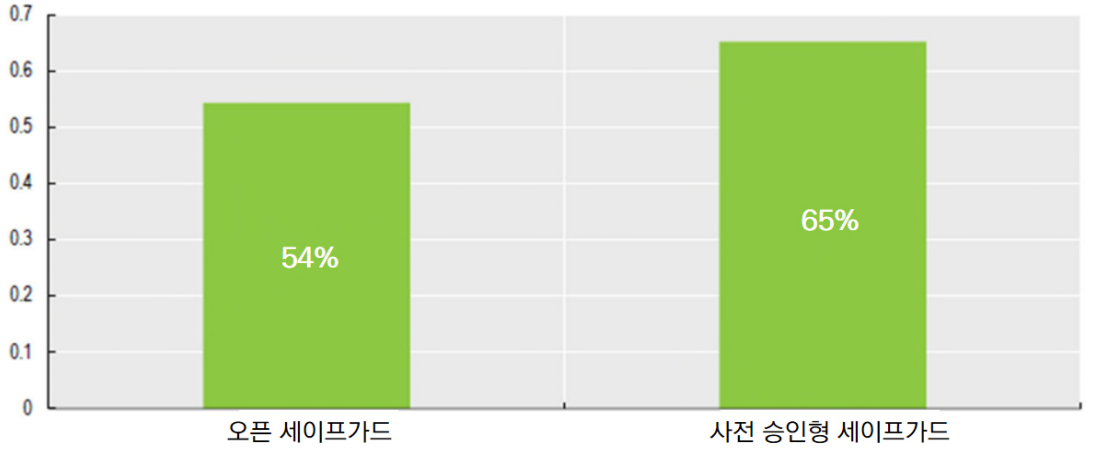

출처 : OECD(2021)

각국에서 사용되는 오픈 세이프가드와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오픈 세이프가드와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는 '정부의 관여 여부' 차이는 있지만, 데이터 이동 상대국 데이터 보호 법제의 검토와 계약을 통해 데이터 보호를 함

| 그림 6 | 각 유형에 속한 시스템별 각국 제도의 분석[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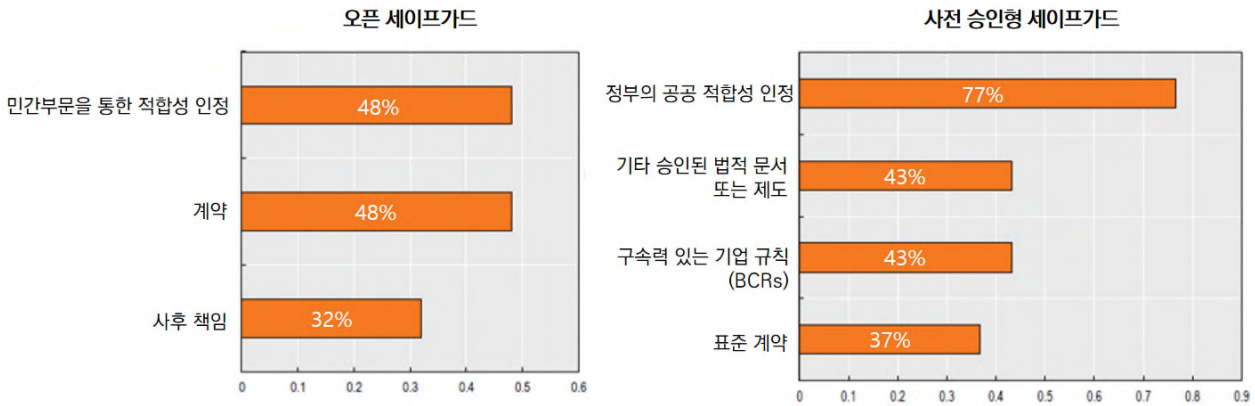

참고 : 백분율은 각 범주에 속하는 국가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오픈 및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 범주 간의 분포는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본에는 46개 국가가 포함됨(GDPR을 시행하는 국가를 별도로 계산할 경우 76개 국가). 그림 6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에서 ' 기타 승인된 법적 수단 또는 제도 ' 에는 승인된 (표준)계약 또는 승인된 행동 강령 또는 인증 제도의 사용을 인정하는 국가가 포함됨
출처 : OECD(2021)

13) OECD 매핑 보고서, 16페이지 그림 4
14) OECD 매핑 보고서, 16페이지 그림 5

b) 다국간 협정(Plurilateral arrangements)

- 다국간 협정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메커니즘을 포함해 일정 유형의 데이터 취급에 관한 규칙, 규범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을 의미함
  - 규칙을 공유하면 데이터에 관한 각국 법적 제도의 공통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마다 각기 다른 법적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됨
  - 다국간 협정은 크게 ①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과 ②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됨
-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으로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OECD Privacy Guidelines),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ASEAN 프레임워크(ASEAN PDP Framework: ASEAN Framework on Personal Data Protection)가 있음
  -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OECD Privacy Guidelines)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 1981년 OECD에서 수립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시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는 규제 도입을 피하기 위한 원칙을 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ASEAN 프레임워크(ASEAN PDP Framework : ASEAN Framework on Personal Data Protection)는 모든 유형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원칙을 포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원칙을 정함
    - 해당 프레임워크는 ASEAN 지역에서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요건을 각국이 명확히 정함으로써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는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Convention 108)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APEC CBPR: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이 있음
  -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Convention 108)은 참가국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 의무를 지우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협정으로 1985년에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55개국이 비준함. 이후 2018년 수정된 Convention 108+가 채택되고 규정이 갱신되고 있으나 아직 발효되진 않음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APEC CBPR: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은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참가국 사업자의 적합성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일본을 포함한 9개 APEC 회원국이 참가함
    - 해당 규칙 하에 참가국들의 책임 대리인(Accountability Agent)이 각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함(CBPR 인증)
    -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을 경우, CBPR 프레임워크 하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의 상호 이동이 가능함

- 최근 제3기관을 통한 기업 인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참가국이 APEC 외 지역으로 확대된 국제 인증 시스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회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이 출범함

다국간 협정은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성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각의 협정은 각기 다른 참가국들을 보유하고 있음. 대표적 다국간 협정 참가국 및 중복 관계는 그림 7과 같음

| 그림 7 | 다국간 협정 현황과 중복 관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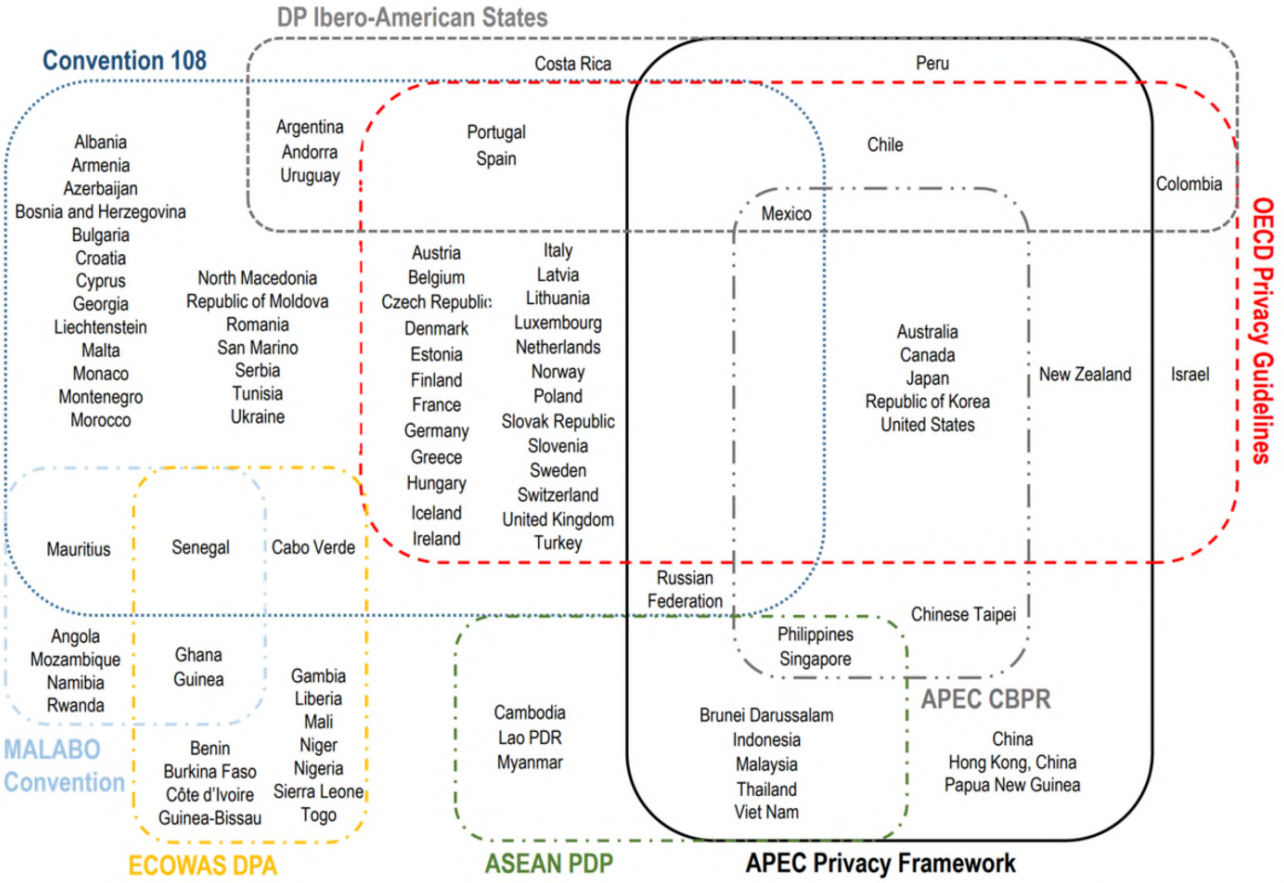

출처 : OECD(2021)

다국간 협정은 일정 유형의 데이터 취급에 관한 규칙, 규범, 원칙 등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며, 다국간 협정이 보급되면 데이터에 관한 각국 법적 틀의 공통성이 높아짐

- 실제 26개 국가·지역[16)]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포함된 원칙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정정 권리, 안전성 및 비밀성, 사용 제한 및 데이터 수집 통지에 관한 원칙은 조사 대상이 된 모든 국가·지역에 포함됨
  - 한편,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에 관한 원칙은 40% 이하의 국가·지역에만 도입됨
  - 이처럼 개별 원칙에 따라 보급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원칙이 70% 이상의 국가·지역에 도입됨

15) OECD 매핑 보고서, 20페이지 그림 7(2020년 11월 업데이트 버전)
16) GDPR이 적용되는 EU 국가를 하나의 지역으로 계산. 만약 GDPR 적용국을 개별 국가로 계산할 경우 56개 국가·지역

| 그림 8 |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포함된 이슈별 중복 현황[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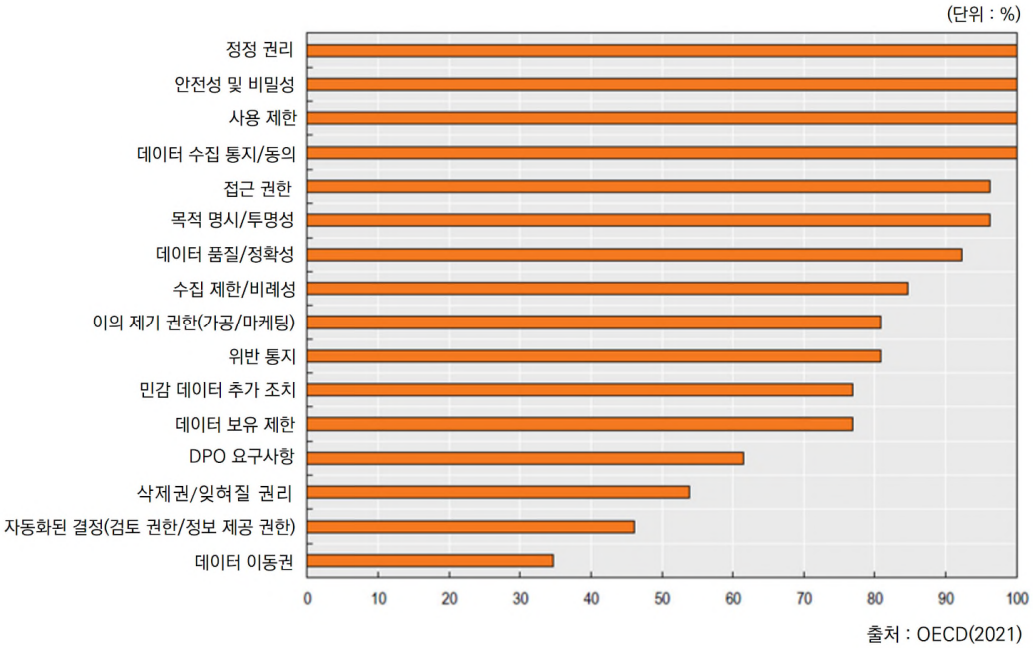

● 그림 9와 그림 10은 각국·지역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중복 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각국·지역별로 중복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럽경제지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은 다른 국가·지역과의 중복 정도가 높은 반면, 중국(CHN)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중복 정도가 낮음

| 그림 9 | 각국·지역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중복 정도[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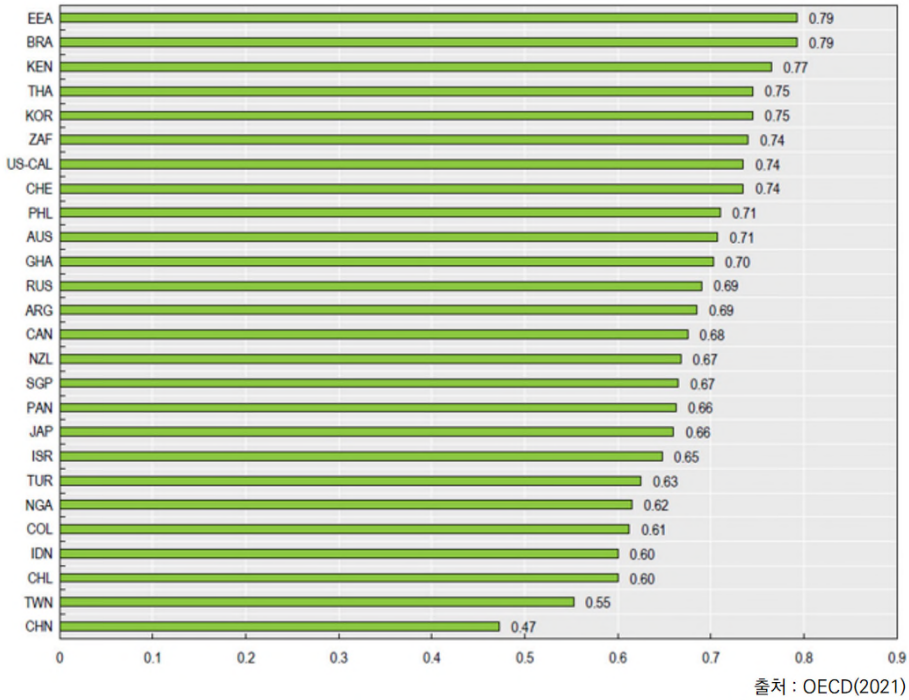

17) OECD 매핑 보고서, 22페이지 그림 8
18) OECD 매핑 보고서, 22페이지 그림 9

| 그림 10 | 2개국·지역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중복 정도[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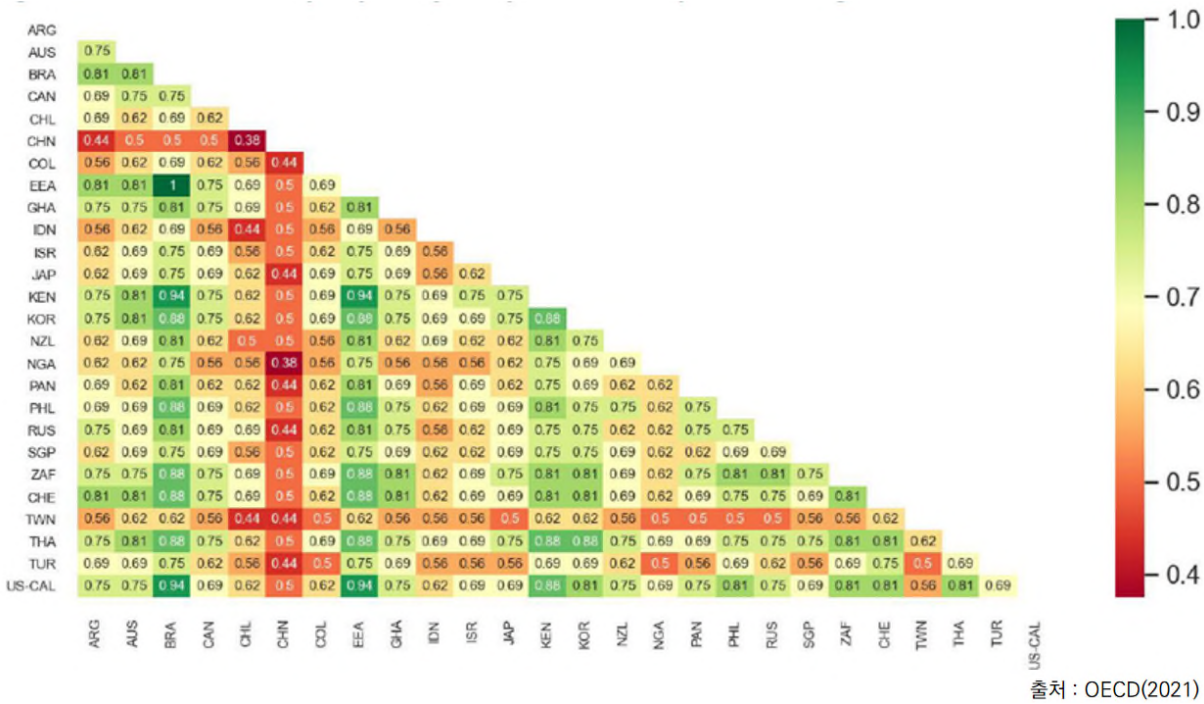

출처 : OECD(2021)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간 중복 정도를 다국간 협정 별로 살펴보면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의 참가국 간 중복률은 76%,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71%,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68%로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에 관한 원칙의 중복 정도는 다국간 협정 별로 차이가 있음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간에 일정한 공통화 경향이 보이는 것은 다국간 협정에 참여한 후, 해당 협정에 포함된 원칙을 자국 규제에 반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그림 분석만으로 인과관계까지 긍정하기는 어려움[20]

- 다국간 협정 별로 참가국 간 프라이버시 법제에 관한 원칙의 공유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협정의 규율 밀도(density), 법적 구속력 여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c) 무역협정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각국의 규제는 물품 및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이 각국의 규제를 얼마나 규율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음

●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이 전자상거래(E-commerce) 또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무역협정에 전자상거래 관련 규칙이 포함되거나 전자상거래에 특화한 디지털 경제 협정[21]이 체결됨

19) OECD 매핑 보고서, 23페이지 그림 10
20) 즉, 국내 규제가 정비됨에 따라 다국간 협정에 참가가 가능해졌을 수도 있고, 다국간 협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 해당 협정에 포함된 원칙이 국내 규제에 도입되어 해당 협정에 참가가 가능해졌을 수도 있음

● 이들 전자상거래 관련 규칙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를 규율하는 조항(이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이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22)]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은 그 내용과 법적 구속력에 따라 크게 ①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 ②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 ③향후 재검토를 정한 조항으로 분류됨

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경 간 데이터 규제 조항으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규정한 한국·페루 FTA, 중앙아메리카·멕시코 FTA가 있음

● 예를 들어, 한국·페루 FTA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됨

> Article 14.9 : 협력
>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성격을 인식하고, 다음을 약속한다 : [...]
> (c) 활발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

②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경 간 데이터 규제 조항으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한을 금지했지만,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을 위한 조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 금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있음

● 예를 들어, CPTPP에는 아래와 같은 조문이 포함됨

> 조항 14.11 :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경 간 정보 이동
> 1. 당사국들은 각 국가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 이동에 관해 자체적으로 규제 사항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이러한 활동이 대상자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해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a)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23)]된 무역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b)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 전송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1) 예를 들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디지털 무역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이 체결됨

22) 무역협정은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어 '다국간 협정'에 포함해 정리할 수도 있음. 하지만 b)에서 다룬 다국간 협정은 대부분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정보 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원칙(그림 8도 참조)을 개별 협정에 참가한 국가 간에 공유함으로써 정보 또는 데이터 보호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에 따라 각국 간 법제 공통성 또는 융합 정도가 높아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반면, 무역협정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런 관점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율을 그 안에 포함시킴. 이처럼 b)에서 다룬 다국간 협정과 c)에서 다룬 무역협정은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실현시키려 하기때문에 OECD 매핑 보고서에서는 다국간 협정과 무역협정을 다른 접근법으로 분류함

23) 무역 제한 목적 추구를 숨기기 위한 '위장'

③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 중에는 무역협정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지 않고, 추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율 도입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일·EU 경제연대협정(일·EU EPA)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됨

> 조항 8.81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 당사자는 본 계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본 계약에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상기 ①~③의 시계열적 증감 경향을 분석하면, 2015년까지 무역협정에 포함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2016년 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급격히 증가함[24)]

| 그림 11 | 무역협정 접근법의 유형별 시계열 증감[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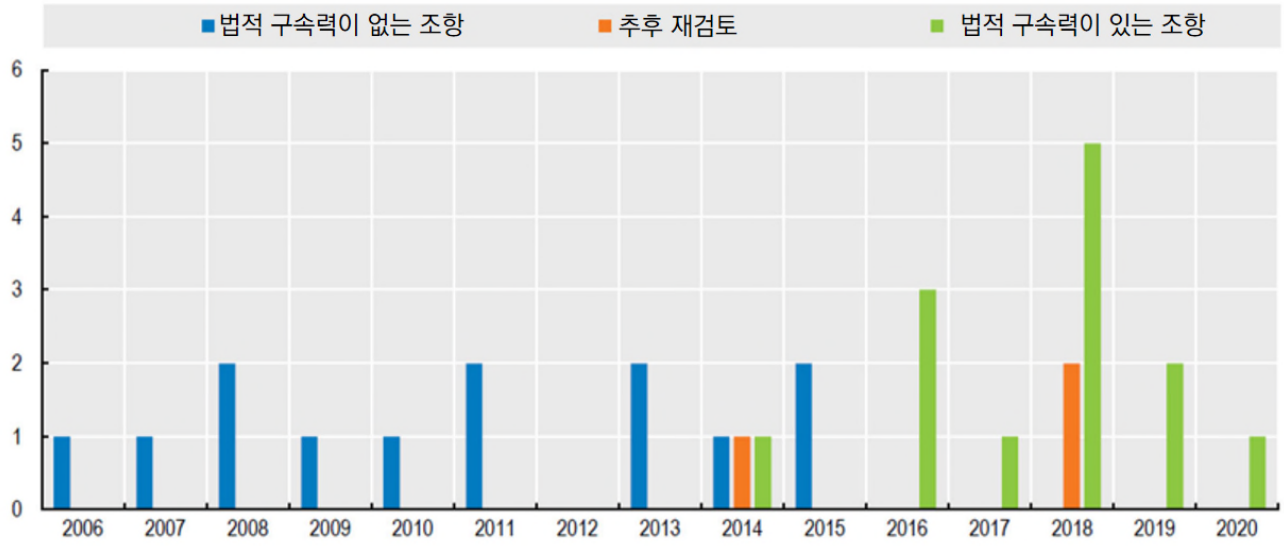

출처 : OECD(2021)

- OECD 매핑 보고서 집필 당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이 27개 체결됨. 그 중 ①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 또는 ②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은 각각 13개였음. 또한, 3개가 ③추후 재검토를 요건으로 정한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을 포함(그림 12 왼쪽 원그래프)
- 국가·지역별로 살펴보면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절반 이상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은 전체의 30% 이하에 그침(그림 12 오른쪽 원그래프)

24) OECD 매핑 보고서는 집필 당시 최신 TAPED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분석함. 그 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영·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영·일 CEPA) 등 최근 체결된 무역협정은 포함되지 않음
25) OECD 매핑 보고서, 27페이지 그림 13

| 그림 12 | 무역협정별 및 국가·지역별 각 유형 도입 여부[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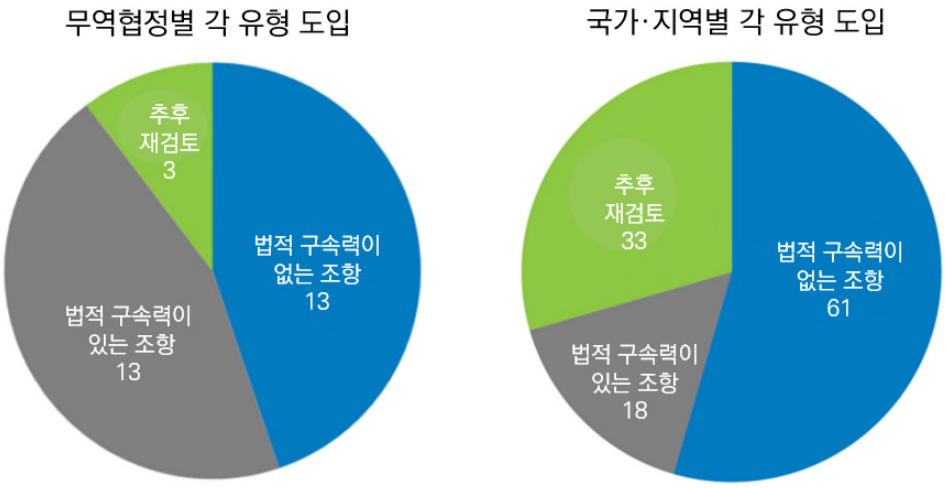

출처 : OECD(2021)

● 표 1은 ②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음

- ②유형은 일반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LPPO)'을 위한 조치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 금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주류임. '일정 요건' 내용은 무역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름

| 표 1 | 공공 정책 목적의 예외[27]

예외 유형	협정체결 수	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 수	분쟁 해결을 위해 데이터 이전 규제를 정한 협정 수
LPPO (i) 차별 금지 (ii) 불필요한 무역제한	6	12	5
LPPO (i) 차별 금지	5	8	5
LPPO (i) 차별 금지 필수 보안 요소	1	2	1
GATT 예외	1	2	1
합계	13 agreements	18 economies[1]	12 agreements

1. 일부 국가는 두 개 이상의 협정에 서명함
출처 : OECD(2021)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협정 중 예외 조건이 가장 엄격한 것은 공공 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가 (i)자의적 또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수단이나 위장된 무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 (ii)정보 이동에 대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임(표1의 첫 번째 행에 해당). 예를 들어, EU-영국 무역협력협정(EU-UK TCA)의 'Article 201.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당사자 간에 무역이

26) OECD 매핑 보고서, 26페이지 그림 12
27) OECD 매핑 보고서, 28페이지 표 1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함. 또한, 'Article 20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는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법률이 전송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규정하는 경우, 당사국이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함[28]

- ②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가 포함된 13개 무역협정 중 CPTPP, USMCA 등 6개 무역협정이 이 같은 예외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5개 무역협정은 (i) 조건만 규정함(표1의 두 번째 행에 해당)

- (i)를 조건으로 하는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인 경우와 더불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이 있는 필수 보안 요소의 경우에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금지의 예외로 정하며, GATT 20조의 예외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금지의 예외로 포함되기도 함[29](표1의 3·4번째 행에 해당)

● ②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규제 정비 조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중에는 규제 정비 시 국제 표준을 참조할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보호 법제 간의 호환성(compatibility)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정비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음(표2). 예를 들어, CPTPP Article 14.8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규정의 채택 또는 유지를 의무화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 법제 간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하도록 규정함

| 표 2 | 무역협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 유무 및 내용[30]

	개인정보보호 조항 포함	국내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도입 요구 또는 장려	국제표준 참조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간의 호환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 개발 장려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 게시를 요구 또는 장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13개 협정)	13	13	10	9	12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13개 협정)	13	7	5	0	0
추후 협의(3개 협정)	3	1	1	0	0
합계(29개 협정)	29	21	16	9	12

출처 : OECD(2021)

28) EU-UK TCA 201조 및 202조

29)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협정의 규율 정도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에 대한 위반이 해당 무역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좌우됨. OECD 매핑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무역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13개 무역협정 중 12개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이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음(표1 1행 오른쪽 열 참조)

30) OECD(2021), 「MAPPING COMMONALITIESIN REGULATORY APPROACHES TO CROSS-BORDER DATA TRANSFERS (OECD 매핑 보고서)」, 28페이지 표 2

d) 표준 및 기술에 관한 이니셔티브(Standards and technology-driven initiatives)

- a)~c)는 주로 정부의 접근법이지만,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비정부기구 및 민간 이니셔티브에 의해 촉진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정부기구의 표준화 추진 활동이 대표적인 예임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다양한 분야, 문제에 대한 표준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중에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도 포함됨

    - 예를 들어 ISO/ICE 27701:2019는 프라이버시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관리자 및 처리자가 GDPR을 포함한 각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기술 발전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

    -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022년 12월 5일 발표된 미국-EU 무역 및 기술 협의회(TTC) 성명에도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해당 데이터 보호 규칙에 따라 건강 및 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및 합성 데이터 사용을 평가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문장이 포함됨

    - 2023년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설립하기로 한 DFFT 실현을 위한 IAP에서도 PETs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 다양한 기술 중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기업은 프라이버시와 비밀성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

    - 암호화 기술의 일종으로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 기술이 개발 중임. 이는 데이터 처리를 제3자에게 의뢰할 경우, 데이터를 암호화해 원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제3자에게 데이터 처리를 맡기고, 처리 결과를 받아 암호화를 풀면 원본 정보를 처리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임

    - 동형 암호화는 비밀성을 철저히 유지하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데이터 처리에 더 많은 시간과 계산 능력을 요한다는 단점도 있음

(OECD 매핑 보고서의 요약)

- OECD 매핑 보고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실현하는 단 하나의 접근법은 없으며, 각국은 다양한 접근법을 조합해 사용하고 있음을 밝힘
  - 첫째, OECD 매핑 보고서는 각 접근법 유형 간 및 유형 내에 일정한 공통성(commonalities)을 발견함
    - a)단독 메커니즘, b)다국간 협정, c)무역협정은 모두 데이터 보호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경향이 보임
    - 단독 메커니즘 유형 내에서는 많은 국가의 단독 메커니즘이 데이터 이동 상대국 법제의 적합성(adequacy)에 대한 검토, 인정 또는 계약을 통해 이동하는 데이터의 보호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데이터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인정하고 있음
  - 둘째, OECD 매핑 보고서는 각 접근법에 일정한 융합(convergence) 경향을 발견함
    - 예를 들어, b)다국간 협정 확대와 함께 각국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틀에 포함된 원칙에 중복 수준이 높은 사실이 보임
    - c)무역협정의 경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금지를 의무화하면서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 셋째, OECD 매핑 보고서는 각 접근법 유형 간에 고도의 보완성(complementarity)이 존재한다고 서술함
    - b)다국간 협정의 발전은 a)단독 메커니즘인 각국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c)무역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할 때 다국간 협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OECD 매핑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향후 국제회의에서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마무리함

PART Ⅲ 접근법 간 보완성 확보

OECD 매핑 보고서의 분석을 한 단계 발전시켜 각 접근법 간 이른바, "보완성(Complementarity)" 강화 방안을 제시함

- OECD 매핑 보고서는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접근법의 공통성, 융합 정도 및 보완성을 높일 필요를 시사하고 있음
  - 즉, 각국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발전하더라도 그 내용에 공통성이 크고 융합 경향이 있으면,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가능성이 향상됨
  - 또한, 각 접근법 간 보완성을 높이면 각 접근법이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확대됨
- OECD 매핑 보고서는 국제적 논의의 토대를 위해 현상을 정리하는 데 그칠 뿐, 향후 각 접근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않음
  - OECD 매핑 보고서는 공통성, 융합 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고 있는데 반해 각 접근법 간 보완성에 대한 서술은 적어 현재 보완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1) a)단독 메커니즘과 b)다국간 협정에 관한 보완성

다국간 협정의 발전이 단독 메커니즘인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포함된 원칙의 공통성 및 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OECD 매핑 보고서의 지적을 근거로 단독 메커니즘과 다국간 협정의 보완성에 대해 서술함

- 단독 메커니즘과 다국간 협정의 보완성으로는 특정 다국간 협정 가입 또는 준수를 근거로 단독 메커니즘 하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의 제3자가 APEC CBPR 시스템 인증을 취득할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외국의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함
-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로 분류되는 개인정보는 데이터가 도달하는 상대국이 특정 다국간 협정에 가입했을 경우, 데이터를 이동하는 국가 정부가 상대국의 법 제도하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음

- 첫째, 특정 다국간 협정 가입을 '직접적인 근거'로 데이터 이동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협정의 규율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다국간 협정의 규율이 참가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을 경우, 아무리 다국간 협정의 규율 내용 및 규율 강도가 높더라도 다국간 협정 참가국들이 해당 협정의 규율을 준수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음

● 다국간 협정의 규율 강도가 높고 참가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 데이터 이동 상대국의 다국간 협정 가입 여부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의 적합성(adequacy)을 검토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여지가 있음

- 다국간 협정 가입을 직접적인 근거로 데이터 이동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

2) a)단독 메커니즘과 c)무역협정에 관한 보완성

▶ a)단독 메커니즘은 데이터 보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국가로의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c)무역협정에 포함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조항의 대부분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

● 따라서 단독 메커니즘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이 무역협정의 규율 대상이 될 경우, 전자는 후자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한 금지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이 경우, a)단독 메커니즘과 c)무역협정 간의 보완성을 실현시킬 방법은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의 예외 조항 등 무역협정에 포함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금지의 예외 조항임

● 무역협정에 포함된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의 예외 조항에서 무엇이 '정당한(正当な)' 공공 정책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 하지만 데이터 이동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합성(adequacy)이 확보되었을 경우만 이동을 허용하는 단독 메커니즘 규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목적은 '정당한' 목적이라 인정할 수 있음

●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경 간 데이터 제한이라도 '정당한' 목적이라 인정할 수 없음

- (i)자의적 또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수단이나 위장된 무역 제한을 적용할 경우, (ii)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 이동 제한을 부과할 경우

-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동등한 법제를 보유한 두 나라가 있을 경우, 사전 승인형 세이프가드에 해당하는 국경 간 데이터 제한 법제를 보유한 국가가 A 국가는 적합성(adequacy)을 인정하고 B 국가는 적합성(adequacy)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B 국가에 대한 (i)부당한 차별에 해당해 무역협정 위반이 됨

- 명확히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충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국가의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ii)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제한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단독 메커니즘과 무역협정은 후자가 전자를 규율함으로써 전자의 내용 및 운용이 데이터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함을 보증하는 보완성을 가짐

- 이는 각국의 규율 권한을 존중하면서 과도한 법 제도 발전과 운용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 중 하나임

● 한편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EU-UK TCA)은 어떤 규정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이 같은 규정은 무역협정이 단독 메커니즘을 규율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므로 단독 메커니즘과 무역협정 간의 보완성을 약화시키는 것임

3) b)다국간 협정과 c)무역협정에 관한 보완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은 대부분 국제 표준을 참조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함

● 예를 들어, USMCA는 아래와 같이 국제 표준으로 특정 다국간 협정을 지정함

> USMCA 조항 19.8 : 개인정보보호
> 2.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디지털 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이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때 각 당사국은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개인정보보호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이사회의 OECD 권고 등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이처럼 무역협정이 다국간 협정을 언급함으로써 무역협정 안에 다국간 협정 규율이 유입되어 무역협정의 규율을 보완하고, 다국간 협정의 영향력이 무역협정을 통해 확대됨

- 이러한 보완성은 무역협정의 규율 발전과 다국간 협정 규율의 심화를 통해 강화됨

4) d)기술과 기타 접근법에 관한 보완성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신뢰성은 기술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데이터 보호 관련 기술은 a)단독 메커니즘, b)다국간 협정, c)무역협정 모두 보완 가능함

● 특히 a)단독 메커니즘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시 상대국으로부터 충분한 데이터 보호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대국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 당사국 간 데이터 보호에 관한 계약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동 시 사용되는 기술로도 확보 가능함

- 예를 들어, EU의 데이터 보호 법제인 GDPR은 개인정보 이동 시 표준계약조항(SCCs)을 사용할 경우 상대국의 법과 관행이 그 유효성을 저해하고,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SCCs에 입각한 보호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상의 기술적 또는 조직적인 조치를 요구함

-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가 공표한 'EU와 동등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이동 방법 보완 조치에 관한 권고'는 데이터 이동 상대국의 법과 관행이 EU의 필수적인 보장 조치 없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접근을 인정할 경우, 데이터 암호화를 기술적 보완 조치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해당 권고는 데이터 이동 시 암호화를 효과적인 보호 조치로 인정하기 위해 암호화 프로토콜, 암호화 알고리즘이 최첨단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통해 공격, 해독 기술에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처럼 a)단독 메커니즘은 기술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함

- 향후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어 어떤 기술이 단독 메커니즘의 데이터 보호 관련 요청을 구체적으로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b)다국간 협정이나 c)무역협정 규율을 기술이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지만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 접근법에 포함된 규율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이용 가능할지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각 접근법의 원칙 또는 규율 속에 반영함으로써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신뢰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PART Ⅳ 결론

원문 보고서는 OECD 매핑 보고서를 기초로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또한, 각 접근법의 경향과 관계를 소개하고, 향후 논의 방향성을 제시함

- OECD 매핑 보고서는, 정부가 DFF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접근법이나 개별 회의에서의 논의를 독립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하나의 접근법이 아닌 여러 접근법을 조합해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됨
  - 즉, 어떤 회의에서 논의되는 접근법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 다른 회의에서 논의되는 다른 접근법과 어떤 상호 작용을 일으킬 것인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규범을 정립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신뢰성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각 접근법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각 접근법이 회의에서 어떻게 발전 및 논의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그 일환으로 OECD 매핑 보고서가 시도한 것처럼 각 접근법의 공통성과 융합 경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국을 설득하는 근거가 되고 타국 설득 시 장벽을 조사하는 데 유용함
- 각 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접근법들은 각각 소관 정부 부처가 상이하므로 부처 간 협력, 나아가 정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내 협력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협력 추진도 중요함

참 고 문 헌

-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2023), 「信頼性のある自由なデータ流通(DFFT)を促進するための多様なアプローチの分析－OECDマッピングレポートの紹介を通じて－」, 根本 拓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https://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23050008.html
- OECD(2021), 「MAPPING COMMONALITIES IN REGULATORY APPROACHES TO CROSS-BORDER DATA TRANSFER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ilibrary.org/trade/mapping-commonalities-in-regulatory-approaches-to-cross-border-data-transfers_ca9f974e-en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ISSUE BRIEF

|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 **발행처** K 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42, 부영빌딩 7, 8, 11층

| **기획 및 편집** 산업기반본부 산업기획팀 하진희 팀장,
이정현 연구위원, 나현대 책임, 안선빈 주임

| **문의처** Tel: 02-3708-5362